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12. 10.(목) 09: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62차, 제64차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58차, 제60차, 제61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12월 3일 제65차 서면회의에서 <의결안건> 1건과 12월 8일 제66차 서면회의에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15-67-28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가> 2015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의 2개 방송국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한다. <나> 허가 유효기간은 도로교통공단이 허가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3년으로 한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의 2개 방송국인 교통원주 FM방송국과 교통창원 FM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허가 대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평가 결과 2개 방송국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는 재허가 여부와 관련해서 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한 도로교통공단은 기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방송국 운영 및 기술적 능력 등에도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허가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2014년 재허가 시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10개 방송국 중 7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4년인 점을 고려하고 방송국 재허가 심사의 효율성, 방송사업자의 희망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건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건 및 권고사항 관련해서는 보도 금지,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70% 이행 등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과하고, 수신환경 개선 노력, 시청자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스 안 심사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부 기술심사 결과를 보면 도로교통 공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조건에 대해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선국 혼신해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노력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일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함이 적절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심사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사업자 희망, 재허가 심사의 효율적 운용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허가조건으로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서 교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는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015년 재허가 신청 시 제시한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방송수신 환경 실태조사 측정보고 등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방송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것, 자체심의부서 인력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방송발전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것 등이고, 이상의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은 <붙임 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원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허원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두 방송국의 심사를 꼼꼼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허원제 상임위원

- 지금 보고가 있었습시다만 이번 심사 과정에서 두 교통방송의 사업내용이 양호해서 일단 2가지 점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하나는 교통방송이 아시다시피 전문편성채널이기 때문에 교통과 기상 관련 정보 중심으로 하되 보도는 제외를 해야 한다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또 두 번째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70% 이상 반드시 준수하도록 재허가 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서는 자체심의부서의 인력 그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하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금 각 지역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연계해서 방송발전에 공헌하도록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허가 기간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교통방송이 지금 10개 교통방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개를 지난해에 4년간 재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번에 창원과 원주와 두 곳을 하면서 사업자 측의 요청이 오히려 모두

10개 교통방송 모두를 한꺼번에 같이 재허가를 하도록 그 기간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허가 기간은 충분히 4년 허가대상이 되지만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 측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67-285~29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사배경은 지난 5월 28일 동일한 허위·과장 광고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심결 이후에도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에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인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조사결과입니다. 실태점검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인지된 4개 통신사업자와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총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온라인 사이트, 지역정보지, 전단지 등 598건의 자료를 채증해서 법률위반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채증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위법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난 10월에 마련한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과장·기만 3가지의 광고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온라인 사이트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인터넷 페이지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WiFi나 셋톱박스 등 소위 경품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98건을 분석한 결과, 477건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4개의 통신사는 540건 중에서 457건을 위반함으로써 평균 위반율이 84.6%에 달하고 5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58건 중에 20건을 위반으로 평균 위반율은 34.5%입니다. 매체별로 보시면 지역정보지는 100% 다 위반을 하였고, 온라인 사이트, 그 다음에 전단지 순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 위반유형으로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3가지 모두 유형이 확인되었고, 다음 쪽 위반유형별을 보시면 허위 광고가 69.2%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만, 그다음에 과장 광고 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 위법성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은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9개 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

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에 따라 일단 이 허위·과장 광고는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준금액은 지난 5월 28일 심의·의결한 전례를 고려해서 사업자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기준금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위반사업자 모두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였기 때문에 20%를 추가적으로 감경을 해서 전체 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20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별 부과내역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안)에 대해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고, 또 관련사항에 대해 이 부분이 재발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세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사하신 내용 중에 종합유선방송사는 지역정보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지를 종합유선방송들은 배포하지 않아서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없었다는 의미입니까?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지역정보지에서는 불법행위한 광고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불법행위한 광고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 다음에 종전의 과징금 처분과 비교해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IPTV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위반비율이 높아서 과징금이 일부 상향되었고,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사인 경우에는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있긴 하지만 종전에 비해 위반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줄어든 셈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유형별 위반건수를 보면 태반이 이동사나 종합유선방송사의 허위 광고입니다. 허위 광고와 기만 광고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허위 광고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서 하는 것이고, 기만은 거짓말한 것인데 과장 광고는 10.9%입니다. 과장 광고는 과장이냐, 아니냐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지요?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래서 건수가 적은 것입니까? 허위 광고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대개 무료, 공짜 이런 표현이 주로 허위 광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절대적 표현들을 쓰는 것이 주로 허위 광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장광고는 기간이나 다량, 결합할인 등 구분 없이 전체요금 할인금액을 가지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등이고, 또 는 실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대 지급 가능금액을 가지고 표현한 것들이 주로 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만 광고는 정보의 일정 부분을 누락함으로써 사실상 다르게 표현한 것들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누락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광고 아전인수적인 광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기업들이 허위 광고를 하는데 본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위반 행위들이 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나타나는데, 대리점보다는 판매점의 행위들이 많습니다. 본사에서 의도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것인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말고 다른 수단이 없는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업정지를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그래서 과징금 이외에 시정명령을 같이 하게 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영업정지에 준하는 것이 있어야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이것이 사실상 다른 위법행위를 통해 모집하는 것과 광고를 통해 하는 것은, 사실 광고행위가 직접적으로 영업행위에 연결되었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광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불법행위들은 불법행위를 통해 직접 영업행위로 연결되는데 그 과정이 광고와 행위 간의 관계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금지행위를 반복하면 제재가 더 가중됩니까? 가중해야겠지요?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다 이번에 더 과징금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하여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뭔가를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5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15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보고드리는 사유는 금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와 활용방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평가개요를 보시면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4개 통신서비스의 2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12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등 3개의 분야, 8개 항목 및 총 49개의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입니다. ‘매우우수등급’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전화 2가지 분야에 대해 각각 1개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등급’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에서 1개사, 초고속인터넷 분야 2개사, 그다음에 인터넷전화 분야에서도 역시 2개사가 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금년 5월에 위원회에서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할 당시에 4개의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범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시다만 포털사업자의 고객센터나 대리점 및 ARS서비스 운영체계 등이 서로 다르

거나 또는 부재하거나 또는 일반 통신사업자와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곤란하는 등 여러 가지 평가 진행에 있어서 실효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시범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평가체계를 마련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를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시범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센티브 부여 및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우우수등급’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 시에는 ‘매우우수등급’ 사업자에게는 30% 이내에서, 그다음에 ‘우수등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반면에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 업무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업자별 우수사례 공유 및 미흡사항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용자보호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수 또는 매우우수한 성과를 받은 사업자들의 이용자보호 방식이 다른 사업자에게 널리 퍼져서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습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최근 MBC 상황 관련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공영방송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MBC의 공적책무 실현,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MBC 상황을 보면 이러한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

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MBC의 권성민 전 PD가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또 이겼습니다. MBC가 패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근 MBC교양국 폐지에 이어서 지금 직종 폐지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 의견청취는 물론, 방문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일부 여권 추천 이사들마저도 절차적 미흡함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과는 아마 공영방송 MBC의 공영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MBC의 공적책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MBC가 일부 경영진에 의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민영방송인지, 아니면 사기업인지 이런 실상에 대해 대단히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기관이고, 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MBC의 공영방송답지 않은 경영방식, 그리고 그 결과로써 공적책무와 공공성이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서 계속 토론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점검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사의 여러 가지 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아무리 방송통신위원회지만 아무런 법적인 뒷받침 없이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또 방송의 공익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같이 방송정책국과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늘 방송의 독립성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MBC에 대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MBC의 공적책임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해 저희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MB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송문화진흥회로 하여금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의견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MBC의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 관련 소송에서 물론 MBC의 방어권이나 법률적인 권한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측의 권한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사 관련 소송에서 이것이 몇 번째 패소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일관되게 사법부에서 MBC 경영진들의 인사권, 특히 징계권 남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면 최소한 공영방송 경영진이라면 왜 사법부에서 이렇게 일관된 패소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에 오후 5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2분 폐회 】